

제 1033 호

1984.8.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문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3호
전화 : 725-7661-9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25-6090

시보

차 례

- ◎ 조 례
 - 제 1903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케중개정조례 3
- ◎ 규 칙
 - 제 2071 호 : 서울특별시가로수관리규칙개정규칙 3
 - 제 2072 호 :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개정규칙 11
 - 제 2073 호 : 서울특별시도로굴착관리사업조정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11
 - 제 2074 호 : 서울특별시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칙중개정규칙 13
 - 제 2075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제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개정규칙 22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059

◎	고	시	
	제 480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인가고시	23
	제 481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추가)	23
	제 482 호 :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24
	제 483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26
	제 484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기적승인	27
	제 485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고시	27
	제 486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지적승인	28
	제 487 호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설계변경허가	28

◎	공	고	
	제 483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시행공람공고	29
	제 484 호 :	판인재교부폐기공고	29
	제 485 호 :	1983 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공고	30
	제 486 호 :	건설업(전문공사업)면허취소	31
	제 488 호 :	공산품품질검사불합격상품공고	32
	제 489 호 :	K, S 표시정지처분공고	32
	제 490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판계도면공람	32
	제 491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판계도면공람	35
	제 494 호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세풍운수정류장)	36
	제 495 호 :	건설업(전문공사업)면허취소	37
	제 496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7
	제 498 호 :	구로지구환지계획일부변경 및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40

◎	구	청	공	고
	강	서	구	공
	고	제	52	호
	:	직	인	개
	:	각	공	고
				40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4.8.1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903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중
“110원”을 “140원”으로 “8원 62
전”을 “1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가로수관리규칙개정 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8.1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2071 호

서울특별시 가로수관리규칙개정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내 가로수를 계획상있게 심고 호
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국토녹화, 경관
조성, 공해방지, 시민보전등을 위
하여 시가 및 강변지역등의 가
로와 노변에 조화있게 심는 나
무를 말한다.
2. “가로수 관리책임자”라 함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구청장을 말
하며 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3. “단열심기”라 함은 차도 측
보도변에 1열로 심는 것을 말
하고 “병열심기”란 같은 보도
상에 2열로 심는 것을 말하며,
1열은 차도측에 1열은 건물측
에 심는다.
4. “정식”이라 하면 나무모양이
불량한 기존 가로수를 같은 나
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5. “가로수 식수대”라하면 가로
수를 보도정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물수기, 거름주기등 사

후관리에 편리하도록 가로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이하 식수대라 한다.

6. "가로수 치지대"라 하면 가로수를 기상의 피해 및 인위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새로 심는 가로수의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이하 치지대라 한다.

7. "가로수보호관"이라 함은 식수대내의 흙의 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이하 보호관이라 한다.

8. "가로수보호대"라 함은 가로수를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이하 보호대라 한다.

9. "가로수급수관"이라 하면 가물시 물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이하 급수관이라 한다.

제 3 조 (나무종류 선정기준) 가로수의 종류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매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2. 서울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나무
3. 수형이 아름답고 녹음이 짙은 나무
4. 인위적 피해에 강한 낙엽 활엽수

제 4 조 (나무종류) ① 가로수로 심는 나무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심지 - 버즘나무, 은행나무, 가

중 나무

2. 교외지 - 버즘나무, 가층나무, 은단풍, 느티나무, 회화나무, 백합나무, 이태리포플러, 칠엽수

3. 강변로 - 버즘나무, 회화나무, 수양버들

② 제 1항 이외에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나무

제 5 조 (나무모양의 표준) 가로수로 심는 나무의 모양은 다음 각호의 표준에 의한다.

1. 나무높이 3.5미터, 가슴높이 지름 6센치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심가 및 특정지역에는 나무높이 4미터, 가슴높이 지름 10센치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나무별 특유의 모양을 갖추고 나무줄기는 곧아야 한다.

3. 가지가 균형이 잡히고, 생육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나무껍질에 손상이 없고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5. 활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분의 크기는 밑동지름의 4배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나무심기의 기준) 가로수의 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가로수를 심는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노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보도의 폭이 2미터이상의 도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여건 및 도시경관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심을 수 있다.

2. 가로수를 심는 열은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 병열심기도 할 수 있다.

3. 병열심기는 보도폭이 6미터이상 넓은 지역으로 도로의 바깥측이 건물에 접하지 않은 곳과 건물이 인도의 바깥측 경계에서 충분히 떨어져 건축된 곳에 한하여 심는다. (학교, 기관의 담장 밑 또는 옹벽, 석축, 절개지)

4. 같은 노선에 같은 나무종류를 심는다.

5. 심는 거리는 7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는 6미터 거리로 심는다.

6. 심는 위치는 보차도 경계에서 40-50센치미터 떨어진 보도에 심는다.

7. 자연경관 및 도로보호와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는 심기를 제한할 수 있다.

- 가. 심기가 부적합한 도로
- 나. 커브길 또는 교차로로써 차

량의 시계를 가리는 구간
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리는 구간

라. 교통신호등, 각종안내판의 시계를 가리는 장소

제 7조 (가장식) ① 나무모양이 다음각호와 같은 불량한 가로수는 적기에 바꾸어 심어야 한다.

- 1. 말라죽은 가로수
- 2. 나무껍질에 많은 해로운 벌은 가로수
- 3. 나무줄기가 부러져 있는 가로수
- 4. 병충해에 감염되어 병목현상이 없는 가로수
- 5.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 6. 미관을 해치는 나무모양이 불량한 가로수
- 7. 나무줄기가 썩어 넘어갈 경우 사람 및 건물에 피해를 예상되는 가로수
- 8. 교통사고,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 가로수

② 바꾼어진 가로수는 관리자 책임하에 처분하고 그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8조 (심는 기간) 가로수를 심는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

하여 심을 수 있다.

- 1. 봄철 : 3월상순 - 5월상순
- 2. 가을철 : 9월하순 - 11월하순

제 9조 (보호시설) ① 가로수는 심은 후 1년내지 2년간 별표 1-1 및 1-2에 의한 지지대를 설치하여 풍해 또는 인축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재료는 복재, 철선, 플라스틱, 철파이프제품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가로수를 심을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식수대를 설치한다.

③ 교압명탄보도부력 설치지역과 도심지 및 주요간선도로에는 별표 3-1 및 3-2에 의한 보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버스, 택시타는 곳 주변, 주요 시설물주변에는 별표 4에 의한 보호대를 설치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방지하게 할 수 있다.

⑤ 여름철 가뭄의 피해에 대비하여 별표 5-1 및 5-2에 의한 급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0조 (가지치기 및 정비)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1. 가지치기의 시기는 11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실시하되, 교통 신호등 및 안내판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와 사고 피해복에

대하여는 연중 시행할 수 있다.

2. 교압전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닿는 부분만 자르지 말고 전체 수형을 다듬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제일 긴가지 밑의 옆가지는 지상에서 3-4미터 높이까지 옹이가 없도록 제거한다.

4. 통신시설에 장애를 주는 가지는 제거한다.

5. 교통 신호등 및 각종 안내판의 앞을 가리는 가지는 제거한다.

6. 말라죽거나 바람에 쓰러질 위험성이 있는 가로수는 제거하고 파손된 지지대는 즉시 원상복구한다.

제 11조 (병해충방제)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약제를 살포하거나 해를 입은 가지와 잎은 제거 또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

- 3. 알덩이 또는 애벌레, 번데기는 약제살포 또는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

제 12 조 (거름 주기) 관리책임자는 가로수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거름주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심은후 3년까지는 해마다 실시하고 그 이후는 2년마다 실시
- 2. 거름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말린 계분, 부엽토, 퇴비등) 와 화학비료를 사용

제 13 조 (시민관리제 실시) 관리책임자는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공장상가, 주민으로하여금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기르도록 한다.

- 1. 가물시 날주기
- 2. 병해충 발생 또는 사고에 의한 피해복 발생시나 제 14 조에 위반한 행위의 예방
- 3.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 4. 비상 재해시 전제, 제거, 지수복 설치등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등

제 14 조 (금지행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시킨다.

- 1.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2.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을 콘크리트 등의 저수로 이용하는 행위
- 3. 식수대 또는 보호시설위에 물건을 놓거나 세우는 행위
- 4.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벌목고사의 우려가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 15 조 (원상복구) ① 관리책임자는 제 14 조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로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거나 제 19 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의식 또는 활거동이 필요하지 될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공사시공전제 사전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 (비상재해시의 조치) 관리책임자는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차편히 전지하거나 적적더 보강등의

조치

2. 기울거나 넘어진 가로수는 즉시 바로세워야하며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많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철거

3. 인명, 재산, 교통등에 피해 또는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적절한 조치

제 17 조 (존치가로수) 도로의 확장 또는 기타 원인으로 도로상에 위치한 수목으로서 기념 또는 풍치상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은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한 제 3 조 내지 제 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로수로 존치할 수 있다.

제 18 조 (대장비치 및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해마다 11월중에 정기적으로 가로수를 점검하여 생육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노선별 관리대장을 별표 6 - 1 및 6 - 2 양식에 의거 작성비치하고 생육 및 변동상황등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관리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 1 회 이상 관리대장 정비사항을 점검한다.

제 19 조 (배상금 징수) ① 관리책임자는 제 14 조 각호의 행위자가 제 15 조에 의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자로 하여

금 별표 7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배상금을 받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로 인한 피해로써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이 긴급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로써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거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배상금은 잡수입으로 납입시킨다.

제 20 조 (준용규정) 제 8 조, 제 10 조 내지 제 19 조의 규정은 가로수 이외의 수목 (녹지대, 수림대, 수벽 등) 에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6 - 1

○ 로선명 (좌우측)

○ 구간 [시 점
 [종 점

○ 연장

○ 도로명 [라 도
 [보 도

년월일	수 증 별 내 역					증 가 동 사																
	계					증 가			감 소													
						신 식	보 식	하 자 보 식	계	작 연 고 사	인	코 통 단 고	자 잘 후 이 식	자 잘 후 계 거	기 상 피 해	정 신 이 식	정 신 계 거	기 타				

1. 좌, 우측은 시점에서 증점방향으로 결정하고 해당란에 ○표

개 별 관 리 카 - 드

별표 6 - 2

로선명					구간 [시점종점]					유형 [당월별]					좌우측 [좌측우측]																													
관 리 번호	수 종	규 격	위 치	식 재 도	변 동 사 항										보 호 관					보 호 대					금 수 관					지 지 대 (반영구)														
					감 소					증 가					실 처			변 동 사 항		실 처			변 동 사 항		실 처			변 동 사 항		실 처			변 동 사 항											
					년 월 일	사 유	화 인	년 월 일	사 유	화 인	년 월 일	사 유	화 인	년 월 일	사 유	화 인	년	유형(규격)	화 간	년	내	화	년	유형(규격)	화 인	년	내	화	년	유형(규격)	화 인	년	내	화	년	유형(규격)	화 인	년	내	화	년	유형(규격)	화 인	년

1. 관리번호 부여방법 ○ ○ ○
 (로선별) (좌우측) (일련번호)
 [로선별 - 구정별 일련번호
 좌우측 - 좌측 1, 우측 2

별표 - 드																	
관 리 번 호	번호대					급수관					지지대 (반영구)						
	치	변동사항				설치	변동사항				설치	변동사항					
	유형 (규격) 인	화	년 월 일	내 역	화 인	년 월 일	유형 (규격) 인	화	년 월 일	내 역	화 인	년 월 일	유형 (규격) 인	화	년 월 일	내 역	화 인

“별표 7” 배상금 징수액 산정방법

1. 벌채, 수간절단, 소생가망이 없는 피해, 부적기 이식의 경우 배상액 = 수복비 + 작업비 + 지지대비 + 잡비 + 기타경비등

* 수복비는 정부고시가액 적용 (정부고시가액이 없는 경우는 시중시가 적용)

* 기타 경비등에는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를 포함한다.

2. 적기 이식의 경우

배상액 = 실작업비 + 운반비

* 적기 { 3. 1 - 5.10
 9.21 - 11.30

3.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배상액 = 수목대의 20% + 실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관의 1/3 이상 가지치기를 말함.

4. 약도 가지치기의 경우

배상액 = 실작업비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엄보현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072 호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장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다만, 재직중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자는 50 세 까지로 한다” 를 “다만, 재직중인 공무원은 53 세까지, 기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자는 50 세 까지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관리사업조정위원회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엄보현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073 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

<p>정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 조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에 “각구 건설국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삽입한다.</p> <p>제 2 조 중 위원회 다음에 “및 소위원회”를 삽입한다.</p> <p>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3 조 (구성)</p> <p>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1 인 및 위원 15 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1 인 및 위원 10 인 이내로 구성한다.</p>	<p>2.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에 준하여 각구의 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p> <p>제 8 조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관리국 도로과장으로 서기는 도로과 도로시설계장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국 토목과장으로 서기는 토목과 토목계장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위 원 명 단	
<p style="text-align: center;">근 무 부 서 명</p>	<p style="text-align: center;">직 위</p>
<p>1. 국방부</p> <p>2. 한국전기통신공사</p> <p>3. 한국전기통신공사</p> <p>4. 한국전기통신공사</p>	<p>시설국장</p> <p>서울지사장</p> <p>중앙건설사무소장</p> <p>남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p>

근 무 부 서 명	직 위
5. 한국전기통신공사 6. 한국전력공사 7. 한국전력공사 8. 서울특별시 9. 서울특별시 10. 서울특별시 11. 서울지하철공사 12.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13. 한국가스공사 14. 서울특별시경철국	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배전부장 지중선사무소장 건설관리국장 상하수국장 산업경제국장 시설이사 차 장 기술이사 교통과장
<p>서울특별시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1984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p> <p>◎서울특별시규칙제 2074 호</p> <p>서울특별시건설공사조사및시험 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p>	<p>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이 규칙중 "종합기술시험 연구소"를 "건설자재시험소"로 하고 "연구소"를 "시험소"로 하여 "연구소장"을 "시험소장"으로 한다.</p> <p>제 1 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이하 "시"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3 조 (시험의 종류) 건설공사에 하고 (평면도 및 중요 과하</p>

1.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실시하는 토질조사 시험과 재료(기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2.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검사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

3.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관리시험의 실시) 1. 시 소 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별표의 관리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의 강재 등)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규격 표시품 및 법령의

2.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전기통신공사

4. 한국전기통신공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현장사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특수한 자재인 경우는 시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관리시험의 담당) 1. 시 소 관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험요원을 배치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소장은 시 소관공사 현장에서 실시되는 현장관리시험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실에서 행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험소장은 공사의 규모 및 성질상 현장관리시험의 실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관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7 조 내지 제 29 조 및 제 31 조 중 "연구소장등"을 "시험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중앙건설연구소
남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제 1 호 서 식)

기 관 명

분류기호 : 19

수 신 : 건설자재시험소장

제 목 : 공사개요 통지

다음과 같이 공사개요를 통보하오니 검사시험 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2. 공 사 비			3. 공 사 기 간		
4. 공 사 위 치					
5. 시 공 자					
6. 현 장 시 험 실 설 치	설 치				현 장 시 험 가 능 종 목
	미 설 치				
7. 공 사 개 요					
품 종	규 격	수 량	성 과 기 준	비 고	
첨 부 : 1. 설계내역서 (지방서, 일위대가표) 및 도면 (평면도 및 중요 구조도) 1부.					

(제 2 호서식)

건 설 자 재 시 험 소

전시 404-

19

수 신 :

참 조 :

제 목 : 검사시험 선정통지

1. 공사명 :

2. 위 공사에 대하여 당시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칙 제 14
조에 의하여 검사시험 대상종목을 선정 통보하오니 검사시험에 차질없
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종목	규격	수량	검사시험수량	비고

첨 부 : 시험요령서 1부. 끝.

건 설 자 재 시 험 소 장

(제 3 호서식)

시 험 의 퇴 신 청 서

수 신 :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장

제	심사	계장	소장

다음과 같이 시험의뢰 합니다.

시 험 종 목			
시 료 명			
시 료 채 취	공사구간		
위 치	소재지	시 구 동	
시 료 채 취 량		시 료 채 취 자 (현장 감독)	소 속 성 명 <input type="checkbox"/>
시 료 채 취 일	198	시 료 채 취 입 회 자	성 명 <input type="checkbox"/>
공 사 명		시 료 운 송 수 단	철도, 자동차, 인편, 기타
시 공 청 및 대 표 자 명			
생 산 자 및 상 호 명			
시 험 성 과 이 용 목 적	납품자재검수용, 관리시험		

(수수료 내역)				19	
시험 항목	진당수수료	수 량 (건)	금 액	(의뢰자)	
				주 소 :	
				기관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합계금액 : 원)				전 화 번 호 :	
시 립 수 수 료 납 부 영 수 란		합계금액 원을 수입증지로 정히 영수함.			
시 료 운 반 위 임 사 항		위 시료는 채취자에 의하여 (현장공장) 채 취한 시료로, 이를 에게 운반토 록 위임하였습니다. 채 취 자 ㉠			

(제 7 호 서 식)

토 질 조 사 대 장

지 역 별 : _____

지 장 번 호 : _____

작성 년월일	작성자	계장	소장

1. 현 황

위 치		조 사 개 요	
공 사 명			
소 관			
요 량 명			
토 선 명		조 사 시 행 청	
공 사 기 간		및 도 급 자	
근 거 자 료		자 료 보 관 처	
			건설자재시험소

2. 위치명면도

(제 8 호 서 식)

조 사 연 구 시 험 의 퇴 서

(문서번호)

(전화번호)

(발송년월일)

수 신 : 건설자재시험소장

다음과 같이 시정(조사, 연구)를 의뢰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조사(연구) 품목 :

2. 목 적 :

3. 시험조사(연구) 내용 :

4. 시험조사(연구) 수행기간 : 198 부터
198 까지

5. 사업현황 및 장래계획개요 :

6. 기타 참고사항 :

7. 첨부서류 내용 :

신청인 주소

기관(상호)명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제 9 호서식)

수탁조사 (연구) 시험계약서

건설자재시험소장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건설공사 시험 규정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조사 (연구) 시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다음의 조사시험을 의뢰 수탁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제 목 :

나. 목 적 :

다. 내 용 :

라. 수행기간 :

제 2 조 수탁조사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갑이 작성한 본 설계서에 의거 원으로 하여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을은 제 2 조의 조사 (연구) 시험비외에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뢰 시험조사 (연구) 에 필요한 인력, 자재와 설비 및 소모품 기타조사 (연구) 시험에 필요한 제 경비를 부담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 4 조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조사 (연구) 시험보조자를 년 월 일까지 파견할 수 있다.

제 5 조 갑과 을은 수탁조사시험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6 조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 을이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 7 조 을은 수탁공사 (연구) 시험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 8 조 이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위와 같이 세약하고 이를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고 쌍방 서명날인하여 갑, 을 각 1 통씩 보관한다.

갑 : 건설자재시험소장

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에 공포한다. 1984.8.18.
 정에 관한 규칙중 계정 규칙을 이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별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범무행정	1. 패소원인행위자 가. 교의, 경과실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불응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소송 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 기일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1) 주요사건 (2) 기타사건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이상)					견책 이상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80 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
일부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6 호 ('84. 6.11) 로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한 아현 1 구역내 5, 12, 16 구획과 만리구역내 3, 5 구획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제 42 조와 제 6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일부변경 인가고시 한다.
2. 동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등기우편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 인가에 대한 고시로 갈음하고 관계도서는 관할구청(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가. 명 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 나. 위 치: 아현 1 구역 (마포구 아현동 50, 62, 85 번지일대) 만리구역 (중구 만리동 200 번지일대)
 - 다. 면 적: 제 2,834 평방미터
아현 1 구역 2,105
만리구역 729
 - 라. 변경인가내역: 생략 (개별 통보

문 참조)

마.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1984. 8. 13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48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
(추 가)

1. 서울시 고시 제 232 호 (78.5.24) 및 제 207 호 (73.12) 로 시설결정 및 승인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시행령 제 26 조, 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서울시 고시 제 440 호 (84.7.30) 로 도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동일구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인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

1984. 8. 14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11 동 1564-2 ~ 신림 3 동 725-37 간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신림 11 동 미성국교 - 대방변전소간 도로포장 공사)</p> <p>다. 사업의 규모 : $B=8m$ $L=1,038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콘포장 ($t=400CM$) $A=83a$ ○ 하수도 ($D=300-600$) $L=560m$ <p>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 : '84.8.15. ○ 준공 : '84.12.31.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p> <p>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p> <p>아. 시행인가 실제도서 : 별첨 (계제생략)</p>
--	---

건 물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실제이용사항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비 고
						관계인주소성명		
1	신림동 724-4	주택및 점포	연와조 병옥개	99.58 중 2	점포	신림동 724-4 정재조		74.11.28. 신축
2	신림동 725-12	점포	세멘부력조 병옥개	33.12 중 3	일부주택 일부점포	" 725-12 김창호		73.11.24. 신축
3	신림동 725-18	"	세멘벽돌조 병옥개	9.39 중 8	점포	" 산115 조경물		80.7.18 대수선 구조변경
계	3 동			13				

서울특별시고시제 482 호

도심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도시재개발사업 남대문구역제 3 지구, 서린구역제 3 지구, 제 17 지구 을지로 2 가구역제 6 지구, 마포로제 1 구역제 2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5 조,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제 58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제 6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8.13.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가. 재개발사업 변경 결정조서 (별첨 조서작성) 나. 관세도면: 별첨(생략)
--	---

재 개발 사업 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남대문구역제 8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가. 지구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8 지구	중구남창동 6 번지	2,453 ㎡	
변 경	"	"	2,438.6 ㎡	

나. 건축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 세 율	용 적 율	층 수	주 용 도	배 열	비 고
기 정	8 지구	2,453 ㎡	50%이하	600%이하	10층	판매시설	별 첨	
변 경	"	2,438.6 ㎡	46.25%	476.36%	10/5	업무시설 판매시설	"	

2. 서린구역 제 3 지구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결정

가. 건축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 세 율	용 적 율	층 수	주 용 도	배 열	비 고
기 정	3 지구	985 ㎡	40%	600%	10/2	업무시설	별 첨	
변 경	"	923 ㎡	41.97%	420.14%	10/4	"	"	

3. 서린구역제 17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가. 건축계획 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 세 율	용 적 율	층 수	주 용 도	배 열	비 고
기 정	17 지구	2,334 ㎡	40%	589%	15/3	업무시설	별 첨	
변 경	"	2,324 ㎡	"	514%	16/4	"	"	

4. 을지로 제2가구역제6지구 재개발사업 계획변경결정
가. 건축계획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전폐율	용적율	층수	주용도	배열	비고
기정	6지구	1,331㎡	32%	340%	40	업무시설	별첨	
변경	"	1,389㎡	42.57%	609.3%	19/5	"	"	지하1층 판매시설

5. 마포로제1구역제2지구
가. 지구계획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지구	마포구마포동34-1번지일대	1,700㎡	
변경	"	"	1,761.8㎡	

나. 건축계획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전폐율	용적율	층수	주용도	배열	비고
기정	2지구	1,700㎡	38%	450%	10/2	업무시설	별첨	
변경	"	1,761.8㎡	40.06%	598.13%	15/4	"	"	지하1층 판매시설

◎ 서울특별시고시제 483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

1. 건설부고시 제 343호 (78.11.11)로 사업계획 결정된 북가좌제1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와 제58조규정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8. 16
서울특별시장

가. 내역

구역명	위치	사업면적	비고
북가좌제1구역	서대문구북가좌1동145번지일대	34,486㎡	

나. 변경결정조서 : 별첨 (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484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425호(84.7.25)로 도시계획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p> <p>○ 도로지적승인조서</p>	<p>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면은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8. 1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구분	등급	류별	폭 (m)	길이 (m)	가점	중점	비고
신설	소로	3	6	40	중구신당동 292-92	신당동 298-1일대	
"	"	3	6	45	" 340-24	" 343-2일대	

별첨 :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485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고시</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379호(83.7.22) 및 동고시 제 425호(84.7.25)의</p> <p>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조서</p>	<p>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p>
---	---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은평구대조동 산 7-2일대	9,296㎡	(증) 727㎡	10,023㎡	일부해제 162㎡ 면적증정 889㎡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가정	소로	3	6 m	700 m	구과발 111-2	구과발 28-2	일부위치변경
변경	"	3	6 m	700 m	"	"	

◎서울특별시고시제 48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349호(84.6.15)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8. 16.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지적승인조서(제 1안 1호가함 이기시행)
- 나. 지적승인도면 : 별첨(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87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설계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79호(83.9.15)로 사업시행 허가된(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설계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1984. 8. 16.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신정동 737-6
- 나. 사업의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설계변경허가
- 다. 사업의 규모 : 대지 8,698㎡
건물연면적 3,488.40㎡
설계변경(별첨내역표생략)
- 라. 사업시행기간 : 83.9.15-84.9.14
- 마.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강서구목동 404-3
삼마운수주식회사
- 바. 계획명면도 : 별첨(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83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코시제 207호(73.12)로 시설결정 및 동시지적승인된 신림 9동 818-255-5 간 일부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8. 9.

서울특별시장

공 램 개 요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관악구신림 9동
818 ~ 253-41간

나. 사업의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신림9동818 주변하수도공사)시행
다. 사업의규모 :

콘크리트포장 A = 1.58 a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착수및 준공예정일 : 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35일간

바.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
재지 지번 지목및 소유권관리명세(별첨)
사.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다.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
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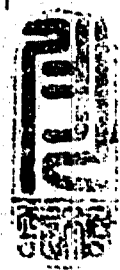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공고제 48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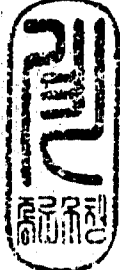
관인재교부 및 폐기공고

종로구청장의 직인 및 종로구청 관
인을 관인규정제 8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조, 제 4조의 규정의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교부 및 폐
기함을 동규정 제 9조 및 동규칙
제 6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4. 8. .

서울특별시장

<p>1. 사용 및 폐기일자 : 1984.8.25</p> <p>2. 사용직인 : 종로구청장직인 및 종로구청 계인</p> <p>3. 폐기직인 : 종로구청장직인 및 종로구청 계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공 인 의 인 영</p>	인 영	<p>폐 기</p>  
공 인 명		종로구청장직인및계인

인 영	<p>신 구</p>  	<p>◎서울특별시공고제 485 호</p> <p>1983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공고</p> <p>1983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 14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8. 14 서울특별시장</p>
공인명		종로구청장직인및계인

(단위: 원)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세입액	세출액	사고이월액
일반회계	840,084,354,000	873,188,319,055.44	706,963,203,096	43,898,001,232
국민주택비특별회계	83,443,000,000	57,023,414,731.28	51,178,333,557	11,034,033,100
주택재개발비 "	21,053,000,000	19,166,335,067	6,963,352,355	6,667,007,596
토정구획정리비 "	116,503,000,000	110,638,445,016.67	68,162,449,556	23,558,353,401
하수처리장비 "	31,212,000,000	28,601,172,785	15,876,315,893	9,753,080,818
유료도로비 "	8,615,000,000	9,191,059,540	8,038,693,458	5,800,000
주차장시설비 "	4,289,000,000	3,875,243,643	2,113,902,653	1,122,562,835
의료보호기금 "	7,297,914,000	7,560,727,449	7,224,047,780	0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액	세출액	사고이월액
특장건축물정비특별회계	3,628,000,000	9,833,932,254	95,532,292	309,595,765
올림픽사업비	78,881,000,000	34,501,257,534	17,813,011,207	26,933,362,000
목. 신정개발비	100,000,000,000	65,000,000,000	63,714,550,071	751,476,825
공과금통합징수비	445,445,000	390,455,000	315,607,923	0
수도사업비	152,618,000,000	155,100,360,693	124,613,263,478	3,702,668,000
지하천운수사업비	340,948,000,000	266,970,539,292	240,973,638,671	16,391,205,433
병원사업비	6,248,000,000	5,690,086,679	4,341,758,455	0
도시재개발사업기금	103,662,000,000	95,642,053,607	61,327,980,847	19,289,486,556
채해구조	2,868,000,000	2,378,377,477	0	0

◎ 서울특별시공고제 486 호

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취소

다음업체는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8 호 및 국세징수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4. 8. 4

서울특별시청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일자	사유	근거법규
토공(서울 82-02-235), 미장방수(서울 82-03-78), 도장(서울 82-05-117)	우리건설(주)	황기연 백한기	성동구행당동 319-36	84.8.16	국세체납	건설업법 38-1-18호 및 국세징수법 제7조

◎서울특별시공고제 488 호
 공산품 품질검사 불합격 상품공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의 규정
 에 의거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상품을 동법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 8. 16
 서울특별시 장
불합격 상품 및 제조업체명단

순번	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대표자	상품명	검사결과	조치내용
1	7-44	도봉구중계동 549-11	쌍용전재	김종훈	시멘트벽돌	불합격	관(시) 보게제
2	7-86	하계동 336-17	삼부큰크리트산업	정기부	"	"	판매 및 진열금지 수거하기
3	7-89	하계동 340-5	태능기업	전봉춘	시멘트벽돌	"	"
4	7-111	수유동 484-4	삼표기와	한석태	시멘트기와	"	"
5	7-249	월계동 876-3	서울공업사	진한술	"	"	"
6	2059	공릉동 20	대성산업사	김방한	"	"	"
7	11-85	강서구방화동 570-2	광동전재	안동섭	시멘트벽돌	"	"
8	15-26	관악구봉천동 870-11	제일기업	이상우	시멘트기와	"	"
9	17-37	강동구이동 378	창성기업	김달여	시멘트부력	"	"
10	17-45	길동 371-1	태성전재	구준희	시멘트벽돌	"	"
11	17-46	마천동 40	이화기업	우제호	시멘트벽돌	"	"
12	17-62	삼전동 38	신진기업	홍맹영	"	"	"

◎서울특별시공고제 489 호
KS 표시정지처분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4. 8. 16
 서울특별시 장
 업체명 : (주) 환금
 소재지 : 서울영등포구도림동 272-1
 대표자 : 윤 일 중

허가번호 : 제 2221 호
 규격번호 : KSB 6401
 품명 : 난방용 주철 방열기
 종류등급 : 벽걸이 세로형 (W-V)
 처분사유 : KS 규격 미달
 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서울특별시공고제 490 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 공람
 1. 하수도법 제 13 조에 의거 도봉구청에서 공공하수도 공사허가한 공공하수도 공사가 완료되었기 하수

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84. 8. 16
 서울특별시 장

공 고 및 공 람 개 요

연번	위 치	시 설 개 요	사 용 개 시 일	배 구 수 량	구 별	비 고
1	쌍문동 486-102 외 4 필지	D=450 $\frac{1}{2}$ L=142 m D=600 L=262	84.8	중 량	합 류 식	
2	미아동 837-871 외 4 필지	D=450 L=50		청 량	"	
3	상계동 77-515 외 13 필지	D=450 L=104		중 량	"	
4	월계동 890-1 외 4 필지	D=600 L=73		"	"	
5	상계동 456 외 27 필지	D=600 L=1480 D=900 L=124		"	"	
6	상계동 181 외 2 외 11 필지	D=300 L=613 D=450 L=720 D=600 L=450		"	"	
7	월계동 480-3 외 9 필지	D=300 L=450 D=450 L=1030 D=600 L=737 D=1200 L=194		"	"	
8	미아동산 35-19	D=600 L=600 D=700 L=100 D=1100 L=50		청 계	"	
9	상계동 406-5 외 6 필지	D=450 L=25		중 량	"	
10	창동 521-16	D=450 L=18		"	"	
11	창동 263-1 외 7 필지	D=450 L=203		"	"	
12	방학동 399-4	D=450 L=90 압거 1.5×1.5 m = 67		"	"	
13	하계동 169-4 외 1 필지	D=600 L=33		"	"	

연번	위 치	시 설 개 요	시 년	개 시 월 일	배수구역	구 별	비 고
14	쌍문동 520-53 외 4 필지	D=450 L=61	84.8		중 량	합 류 식	
15	방학동 396-28	D=450 L=32	"		"	"	
16	방학동 396-4 외 4 필지	D=450 L=217	"		"	"	
		D=800 L=70	"		"	"	
17	상계동산 93	D=450 L=23	"		"	"	
		D=600 L=294	"		"	"	
18	우이동 170 외 3 필지	D=450 L=72	"		"	"	
19	창동산 205-11	D=600 L=75	"		"	"	
20	월계동 532	D=600 L=30	"		"	"	
21	상계동 136-1 외 2 필지	D=450 L=53	"		"	"	
22	수유동 321-1 외 2 필지	D=450 L=88	"		"	"	
		D=600 L=486	"		"	"	
23	쌍문동 446-2 외 1 필지	D=600 L=20	"		"	"	
24	창동 254-3 외 3 필지	D=600 L=80	"		"	"	
25	상계동 438 외 2 필지	D=450 L=111	"		"	"	
26	창동 261 외 3 필지	D=450 L=86	"		"	"	
		D=600 L=112	"		"	"	
27	상계동 185 외 1 필지	D=450 L=17	"		"	"	
		D=600 L=143	"		"	"	
28	방학동 304-9	D=450 L=28	"		"	"	
		D=600 L=44	"		"	"	
		D=800 L=22	"		"	"	
29	수유동 281 외 1 필지	D=450 L=59	"		"	"	
		D=600 L=147	"		"	"	
30	하계동 153-3	D=450 L=219	"		"	"	
		D=600 L=210	"		"	"	

○ 서울특별시공고제 491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
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조에 의거 도봉구
청 인가 토목 410-4135(84.3.3)
호 및 토목 410-9048(84.5.9) 호
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한 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일간 일관연
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별도 통지를 송달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84. 8.

서울특별시장

공고 및 공람개요

연번	위 치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면적 수역	구 별
1	쌍문동 137번지의 1개소 하수도포장	D = 450 ^{mm} D = 600	L = 120 ^m L = 20	84.8	송암	강류관
2	쌍문동 714-23-708-5 외 1개소하수도포장	D = 450 D = 600 D = 800	L = 50 L = 230 L = 80	"	"	"
3	방학동 644-644-25 간 하수도포장	D = 600	L = 170	"	"	"
4	방학동 633-633-27외 1개소	D = 600	L = 230	"	"	"
5	방학동 608-23-608-35 하수도포장	D = 600	L = 90	"	"	"
6	삼계 2동 169-389 간 하수도포장	D = 450	L = 102.5	"	"	"
7	수유 1동 57-12 하수도 포장	D = 450	L = 45	"	"	"
8	방학 2동 615-10-615 -15 하수도포장	D = 600	L = 35	"	"	"
9	창동 593-1 하수도포장	D = 600	L = 300	"	"	"

연번	위 치	시 설 개 요	사 용 개 시 년 월 일	배 수 구 역	구 별
10	방학 1동 691-695번지의 2개소하수도포장	D = 600 L = 202.5	84.8	중 량	합류식
11	공릉동 398-597 간 하수도포장	D = 600 L = 910 암거 (3 × 0.3) L = 60	"	"	"
12	계상국교진입로개설공사	D = 450 L = 215	"	"	"
13	미아 4동 97, 95 주변의 1개소하수도포장	D = 450 L = 282.5 암거 (1.5 × 1.5) ^m L = 30	"	칭 계	"

○서울특별시공고제 494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세품운수정류장)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12호 (83.11.1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66호 (84.2.6)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한다.
2. 관계 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하고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기 바란다.

1984.8.17

서울특별시 장

-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은수동 57-1, 58, 60.
 - 나.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세품운수정류장)
- 다.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6,615㎡
 - 2) 건물계획 - 건축면적 802㎡
건축연면적 2,751.36㎡
-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구로구 오류동 90-10. 세품운수(주) 조 참 원

<p>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구로구청도시정비과 비치</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구로구청도시정비과 비치</p> <p>사. 공람장소 - 구로구청도시정비과</p> <p>아. 공람기간 - 84.8.20 ~ 84.9.3</p>	<p align="center">○서울특별시공고제 495 호</p> <p align="center">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취소공고</p> <p>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각 1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업체의 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p> <p align="right">1984.8.16. 서울특별시장</p>
--	--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자	근거법규
토공(서울 82-02-260), 설비(서울 82-12-235)	현지건설(주)	송인현	강남구논현동 125-2	2 개종이상 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도급시공	84.8.18	건설업법 제 38-1-15

<p align="center">○서울특별시공고제 496 호</p> <p align="center">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47 호 (74.4.20)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307-40 호의 4 필지 및 중화동 179-11 호의 14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허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2 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p>	<p>를 공람한다.</p> <p>2.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p> <p>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기 바란다.</p> <p align="right">1984.8.21. 서울특별시장</p>
--	--

- 공 랑 요 지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상봉동 307-40 호외 4 필지 및 중화동 179-11 호외 14 필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조서
2. 사업종류 및 명칭 : 상봉국교 진입로 포장공사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3. 사업규모 : 폭 6 m 길이 150 m	8. 공랑장소 :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9. 공랑시간 : 1984.8.22 ~ 1984.9.4. (14 일간)
5.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9 일 이내 1984.12.30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관계인 주소성명	합감보		
1	중화동 179-	전	79㎡	79㎡	도로	동대문구상봉동 311	합감보		
2	179-21	대	86㎡	86㎡	도로	.	.		
3	179-22	대	51㎡	51㎡	대지	인천시북구부평동684	최영관		179-7에 에서분할
4	179-23	전	11㎡	11㎡	도로	동대문구상봉동 311	합감보		179-4에 에서분할
5	179-24	대	34㎡	34㎡	대지	동대문구중화동 91-2	유기섭		179-3에 에서분할
6	180-21	대	2㎡	2㎡	도로	중구장충동2가42-2	김순이		180-11 에서분할
7	180-22	대	16㎡	16㎡	도로	중화동 180-12 중구충정로1가75번 지 제 66509	이용부 농 합 중안회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일천오백만 원	180-12 에서분할
8	180-23	대	66㎡	66㎡	대지	중구장충동 2가42-2	김순이		180-13 에서분할
9	180-24	대	1㎡	1㎡	대지	도봉구수유동 472-229	김우식		180-17 에서분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입 면 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주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소유자 주소 성 명	관계인 주소 성 명		
10	중화동 181-1	도	188㎡	188㎡	도로	동대문구 상봉동 329	김석호 김시진 임사회		181에서 분할
11	182-2	과수	13㎡	13㎡	도로	동대문구 상봉동 313	임석호 김시진 임사회		상봉동313 에서분할
12	183-2	대	262㎡	262㎡	도로	동대문구 상봉동 329	임석호 김시진 임사회		상봉동313 183 에서분할
13	180-20	대	2㎡	2㎡	대지	동대문구 중화동 180-9	김유태		180-9 에서분할
14	307-40	대	8㎡	8㎡	대지	상봉동 307-24	최봉환		307-24 에서분할
15	309-21	대	45㎡	45㎡	대지	309-17	김옥분		309-17 에서분할
16	372	과수	31㎡	31㎡	도로	동대문구 상봉동 313	임석호 김시진 임사회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 황	소유자 주소 성 명		소유권이외 의 권리 명세
						소유자 주소 성 명	관계인 주소 성 명	
1	중화동 179-3	주택	연외조평옥개	5㎡	주택	중화동 91-2	유기성	
2	중화동 179-7	주택	연외조평옥개	30㎡	주택	인천시부평동 604	최영관	
3	상봉동 307-24	주택	연외조평옥개	1㎡	주택	상봉동 307-24	최봉환	
4	상봉동 309-17	주택	연외조평옥개	3㎡	주택	309-17	김옥분	

◎서울특별시공고제 498 호

구로지구환지계획일부변경및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1. 건설부 공고 제 37 호('79.3.29)로 사업시행 인가된 구로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제 56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일부변경 및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84.8.18

서울특별시장

- 환지계획 변경내용

가. 사업명 :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및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각일부

다.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관계도서생략)

구 청 공 고

◎강서구공고제 52 호

- 직인개각공고 -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정 2 동장, 신정 4 동장의 직인 및 계인을 개각사용 승인하였기 동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4.8.8

강 서 구 청 장

- 1) 사용일자 : 1984.8.20 09:00
- 2) 공 인 명 : 신정 2, 4 동장의 직인 (민원사무전용) 및 계인
- 3) 공인의 인명.

공 인 의 인 명
(민원사무전용)



인

영

공인명



신정 2 동장직인 및 계인

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사 령</div>	<p>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이 있었기 통보함.</p> <p>발령 제 314 호</p> <p style="text-align: right;">감사관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수사보 최 경 환 권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 style="text-align: right;">1984 년 8 월 16 일자</p>
공인	신정 4 동장직인 및 계인		
◎ 1984.8.18 일자		발령 제 31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신미범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84. 7.10 일자 (발령호수 275 호) 신규발령을 동일자 로 취소함.	동부병원	지방약무사보시보
허영희	"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원보시보
양정옥	"	"	"
이순희	"	"	"
이경자	"	"	"
이원경	"	"	"
조영숙	"	"	"
김명숙	"	"	"
곽선희	"	"	"
서울특별시장			